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G 보

제26호 2026. 7. 1.(수)

입법예고

광양시 공고 제728호
광양시 공고 제1524호
광양시 공고 제1530호
광양시 공고 제1535호

광양시 공고 제1536호

광양시 공고 제1547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광양시 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7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입법예고 14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74

고 시

광양시 고시 제172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80

공 고

광양시 공고 제153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81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사항

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조례 제6조의2(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현행	개정(안)
< 신 설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해당 기업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6. 24. ~ 7. 14.(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투자경제과장, 전화: 061-797-2815, FAX: 061-797-2583, E-mail: dhskrl12@ko 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업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u>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u>1. 해당 기업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 <u>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u> <u>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u> <u>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u>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

광양시 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6월 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2. 입법취지(제정이유)

- 국내 어업분야 최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가치를 이어가고, 어업활동 유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 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유산의 계승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 보전계획의 수립,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5조)
-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7조)
-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9조)

- 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비밀유지, 보고·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2조)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6. 24. ~ 7. 14.(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5. 제정 조례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직접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410, 철강항만과 (우 57777)
- 전 화: 061-797-2411
- 팩 스: 061-797-2587
- 전자우편: limyang@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계승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광양시 관할구역 내에 지정된 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관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광양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관리·활용 목표 및 기본방향
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 실태
3. 세부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방안

4.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연구, 교육 및 홍보 방안
5. 전문인력 양성 및 중간지원조직(협력기관) 육성 방안
6. 지역주민,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교류·협력 방안
7. 사업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방안

제5조(사업) ① 시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조사·연구 활동
 2. 전승 교육 및 홍보 활동
 3. 전통기술 보전·전수를 위한 체험관·시범지구 설치
 4. 주민 주도형 어업 유산 활성화
 5. 그 밖에 보전·관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원형·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이익과 주민생계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 ③ 시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국가중요어업유산별로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전계획 및 세부사업에 관한 의견 제출
2. 전승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홍보사업의 기획·운영 참여
3. 지역주민의 참여 촉진 및 갈등 조정·중재 역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양수산업무 담당 과장
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소유권·점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그 대표자
3. 해당 어업유산이 있는 지역의 주민 또는 그 대표자
4. 어업유산의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및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전자적 수단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요 결정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협의체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제12조(보고·평가) ①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전계획 및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2. 입법취지(개정이유)

- 이·통장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해 이·통장이 주민들로부터 금품 수수시 해임사유 추가
- 이·통장의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문상 오류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통장 해임사유 추가(안 제8조)
 - 이·통장이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한 경우 해임하도록 규정
- 이·통장 임기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0조)
 - 해임 또는 사임으로 이·통장을 새로 임명하는 경우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 이·통장의 잔여임기로 하는 것으로 규정
- 문구 수정 (안 제6조, 제8조, 제9조)

-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5항에 기재된 ‘제4조제4항’은 존재하는 않는 조항으로 해당 문구를 ‘제4조제3항’으로 수정
- 제9조제3항에 기재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문구 수정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6. 25. ~ 7. 15.(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 규칙안: [붙임2]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 시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직접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총무과 (우 57785)
- 전 화: 061-797-2719
- 팩 스: 061-797-2238
- 전자우편: borsar11@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한 경우

제8조제3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제3호에서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 제5호, 제6호”로 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해임되어”를 “해임 또는 임기 만료 전 사임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명절차)①제4조제4항에 따라 이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보자 중 주민총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임명절차)①제4조제3항에 ----- ----- ----- -----.
제8조(해임사유)①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부터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해야 한다. 1. ~ 3. (생략)	제8조(해임사유)①----- ----- ----- ----- ----- ----- ----- -----.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10.(생략)	4. <u>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한 경우</u>
③ 읍면동장이 제1항에 따라 이·통·반장을 해임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주민총회 및 당해 이·통·반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5.~11. (현행 4호~10호와 같음)
	③ ----- ----- ----- ----- ----- ----- ----- -----.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 -----.

현행	개정안
④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사람(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외한다)은 해임된 날로부터 5년간 이·통·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⑤ 읍면동장은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통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④ -----(제3호, 제5호, 제6호는 제외한다)은 ----- ----- -----. ⑤ ----- 제4조제3항 ----- ----- ----- ----- ----- -----.
제9조(읍면동 이·통·반장임명위원회) ③ 읍면동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생략) 2.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3. ~ 4. (생략)	제9조(-----)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읍면동 <u>주민자치회</u> 임원 3.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임기 및 연임)③ 이·통장이 해임되어 새로 임명한 경우에는 당해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 이·통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및 연임)③ ----- <u>해임 또는 임기 만료 전 사임하여</u> ----- ----- ----- ----- ----- -----.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법인등기부등본의 명칭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법인등기부등본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해당사항 정비

3. 관계법령

-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4. 주요내용

○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6. 6. 2.)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 6. 15.)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7. 1. 17.)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6. 7. 7.)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4. 1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 4. 15.)
- ▶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22. 4. 6.) 등

○ 조례에서 사용되는 “법인등기부등본” 명칭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로 정비

- ▶ 2008년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기초로 한 ‘등·초본’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5. 조례안 : 별첨

6. 입법예고기간: 2026. 6. 25. ~ 2026. 7. 6.

7. 의견제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기획예산실(우 57785)
- 전 화 : 061-797-2709
- 팩 스 : 061-797-2574
- 전자우편 : ekfhd0327@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2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9조”로 한다.

제4조(「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5조(「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광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6조(「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8조(「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나목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의 개정)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2조(「광양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5조(「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6조(「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7조(「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8조(「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9조(「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중 “법인 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0조(「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1조(「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2조(「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23조(「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 ————— ————— ——.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제5조(기능)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조(『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 7. (생략) ⑤·⑥ (생략)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 ----- 4. ~ 7.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	---

제3조(「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생략)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④ (생략)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9조-----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	-----

제14조(준용)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준용) ----- ----- ---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

제5조(「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수당 등) ① ----- -----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지역 경쟁력 강화사업의 하나로 일반 산업용 및 건설용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는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78조제2항----- ----- ----- ----- -----.

제7조(「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0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법인등기부등본</u> 을 확인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 ⑥ (생략)	제30조(허가절차) ① ----- ----- ----- ----- ----- ----- ----- -----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를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관리위탁 등) 시장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생략)	제11조(관리위탁 등)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생략)	2.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 ----- ----- ----- ----- ----- 3. (현행과 같음)
---	---

제9조(「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	-----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u>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10조(「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라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조(목적) -----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 -----. 제2조(정의) ----- -----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

제11조(「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지원 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 <u>등기부등본</u>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지원 신청자의 자격) ---- ----- <u>등기사항</u> <u>증명서</u> ----- ----- ----- ----- ----- -----.

제12조(「광양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u>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3조, 「 <u>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3조에 따라 광양시 내 아동·여성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u> <u>등에 관한 법률</u> 」 ----- ----- ----- ----- ----- -----.

제13조(「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관내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제14조(「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는 <u>법인등기부등본</u> ,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 ----- ----- -----.

제15조(「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신청 및 구비서류) ----- ----- ----- -----.

1. (생략) 2. 법인(단체) <u>등기부 등본</u> (인감증명 을 포함한다) 1부 3. ~ 6.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u>등기사항증명서</u> ----- ----- 3. ~ 6. (현행과 같음)
--	---

제16조(「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지원방법) ① (생략) ②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마을(회) 소유 건축물대장 및 <u>등기부등본</u> 3. (생략)	제9조(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u>등기사항증명서</u> 3. (현행과 같음)

제17조(「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u>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u>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 ----- ----- 「 <u>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 ----- -----.

제18조(「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농업인의 날 기념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 다. ② (생략)	제7조(농업인의 날 기념 및 지원) 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위탁신청) ①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위탁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인등기부등본 3. ~ 7. (생략) ② (생략)	제9조(위탁신청)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1. 정관 1부	-----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 하는 증빙서류	-----
6. 사업개시 예정일로 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 확대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
7.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항	-----
-----	-----

제20조(「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 <u>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u>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 「 <u>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15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생략)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4. (생략)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제3조 제2항을 적용한다. 6. · 7. (생략) ③ · ④ (생략)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 -----.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 9. (생략)

② (생략)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6. ----- 「물환경보전법」 -----

-----.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물환경보전법」 -----

-----.

③ ~ ⑥ (현행과 같음)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법인등기부등본의 명칭이 법인등기사항증명으로 바뀌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법인등기부등본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해당사항 정비

3. 관계법령

-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4. 주요내용

○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6. 6. 2.)
-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7. 8. 3.)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 '16. 1. 19.)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15. 6. 22.)
- ▶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양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5. 12. 31.) 등

○ 규칙에서 사용되는 “법인등기부등본” 명칭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로 정비

- ▶ 2008년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이 형태의 등기부를 기초로 한 ‘등·초본’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5. 규칙안 : 별첨

6. 입법예고기간: 2026. 6. 25. ~ 2026. 7. 6.

7. 의견제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기획예산실(우 57785)

- 전 화 : 061-797-2709

- 팩 스 : 061-797-2574

- 전자우편 : ekfhd0327@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5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5호 중 “등기부등본”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등기사항증명서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중 “등기부등본”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조(「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4조(「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5항 본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5조(「광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현장 운영 규칙」의 개정) 광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현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양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 중 “토지등기부등본상”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23호서식, 제25호서식 중 “택지조성과”를 각각 “산단 택지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토지등기부등본”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제23호서식, 제25호서식 중 “산단과”를 각각 “산단택지과”로 한다.

제8조(「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23호서식, 제25호서식 중 “택지조성과”를 각각 “산단택지과”로 한다.

제9조(「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감정평가법”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 중 “토지등기부등본상”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23호서식, 제25호서식 중 “택지조성과”를 각각 “산단택지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토지등기부등본”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조(「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을 “「예산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를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물품관리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의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영 제4조제4항”을 “영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광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방채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를 “「지방채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로 한다.

제12조(「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3조(「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4조(「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5조(「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의 개정)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등기부등본</u> 또는 설계서	5. <u>등기사항증명서</u>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교환)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u>등기부등본</u>	5. ----- <u>등기사항증명서</u>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생략)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등기부등본

3. ~ 6. (생략)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사업소·읍·면·동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등기부등본

8. ~ 10. (생략)

② (생략)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생략)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등기부등본

3. ~ 5. (생략)

② -----

-.

1. (현행과 같음)

2. 등기사항증명서

3. ~ 6. (현행과 같음)

제19조(매수신청)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등기사항증명서

8.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등기사항증명서

3. ~ 5.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토 지)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부 색 인
	분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세분류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건 물)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부 색 인
	분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세분류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선 박)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부 색 인
	분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세분류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토 지)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부 색 인
	분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세분류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건 물)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부 색 인
	분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세분류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선 박)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부 색 인
	분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세분류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공작물)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부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적도등본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 (입목죽)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부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적도등본					

제2조(「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보상금)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보상금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보상금)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3조(「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구비서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략) 3. <u>법인등기부등본</u>, 임원 및 자 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 8.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노인요양원 운영 수탁 신청서 <table><tr><td>단체(법인, 개인)명</td><td></td><td>대표자성 명</td><td></td></tr><tr><td>사무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tr><td>설립일자</td><td></td><td></td><td></td></tr><tr><td>주요사업내용</td><td></td><td></td><td></td></tr><tr><td>소유재산</td><td>동산 천원</td><td>부동산 천원</td><td></td></tr><tr><td>위탁신청사유</td><td colspan="3"></td></tr></table> 상기 요양원을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수탁 운영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법인)명 : ㉠ 사무소 : ㉠ 대표자 성명 : ㉠ 붙임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노인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 포함) 1부 6.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 광 양 시 장 귀하	단체(법인, 개인)명		대표자성 명		사무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주요사업내용				소유재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위탁신청사유				제6조(구비서류) ----- ----- -----. 1. 2. (현행과 같음) 3.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 4. ~ 8.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노인요양원 운영 수탁 신청서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 colspan="3"></td></tr></table> 붙임 1. ----- 2. <u>등기사항증명서</u> ----- 3. ----- 4. ----- 5. ----- 6. ----- 7. ----- -----	-----		-----		-----		-----		-----				-----				-----	-----	-----		-----			
단체(법인, 개인)명		대표자성 명																																															
사무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주요사업내용																																																	
소유재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위탁신청사유																																																	
-----		-----																																															
-----		-----																																															

-----	-----	-----																																															

제4조(「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지원특례)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4조의 입지보조금, 제5조의 시설보조금의 지원비율을 각각 1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2. (생략)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④ (생략) 제14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생략)	제11조(지원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에 관한 특별법」 ----- -----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별표 5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아야 하며, 기업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원 가능 금액을 특별보조금의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제16조(보조금의 결정)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조례에 따른 투자기업 보조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2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생략)	⑤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 ----- ----- ----- ----- -----. ⑥ (현행과 같음)
--	--

제5조(「광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현장 운영 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현장 제정 및 개정 절차) ①·② (생략) ③ 현장의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한다.	제6조(현장 제정 및 개정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광양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6조(「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5조(토지의 평가방법) 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0조에 의한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5조(토지의 평가방법) ----- ----- 「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 」----- ----- ----- ----- ----- -----.
제41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의 <u>토지등기부등본상</u> 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1조(청산대상자) ----- ----- ----- <u>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u> ----- -----. ----- ----- -----.

[별지 제3호 서식]

광양시 공고 제

호

채비지 매각 공고(제25조 관련)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채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목록은 광양시 택지조성과에서 배부)

공 매 번 호	재 산 표 시	면 적 (㎡)	예 정 가 격	비 고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광양시 택지조성과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택지조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광 양 시 장

[별지 제23호 서식]

남 부 선 광양시 광영·의암지 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 처	광양시 택지 조성과
NO	지번
예산과 목	환지청상금, 잡 수입
납부토 지	번지 동
납부 자	
일금	원 금 연체로 계원
납부기 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20 광 양 시 일 장 바랍니다.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
광양지점

영수필통지서 광양시 광영·의암지 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 처	광양시 택지 조성과
NO	지번
예산과 목	환지청상금, 잡수입
납부토 지	번지 동
납부 자	
일금	원 금 연체로 계원
납부기 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 여 납부합니다. 20 광 양 시 일 장 특별회계 수입금 출 납귀하	
수납일부 인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
광양지점

영 수 중 광양시 광영·의암지 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 처	광양시 택지 조성과
NO	지번
예산과 목	환지청상금, 잡 수입
납부토 지	번지 동
납부 자	
일금	원 금 연체로 계원
납부기 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20 영수합니다. 일 장	
수납일부인	취급자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
광양지점

[별지 제3호 서식]

산단택지과				

산단택지과
산단택지과

[별지 제23호 서식]

산단 택지과	
NO	지번
예산과 목	환지청상금, 잡 수입
납부토 지	번지 동
납부 자	
일금	원 금 연체로 계원
납부기 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20 영수합니다. 일 장	
수납일부인	취급자

산단택지과	
NO	지번
예산과 목	환지청상금, 잡 수입
납부토 지	번지 동
납부 자	
일금	원 금 연체로 계원
납부기 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20 영수합니다. 일 장	
수납일부인	취급자

산단 택지과	
NO	지번
예산과 목	환지청상금, 잡 수입
납부토 지	번지 동
납부 자	
일금	원 금 연체로 계원
납부기 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20 영수합니다. 일 장	
수납일부인	취급자

제7조(「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공고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목록은 광양시 산단과에서 배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15%;">공 매 번 호</th><th style="width: 15%;">재 산 표 시</th><th style="width: 15%;">면 적 (㎡)</th><th style="width: 15%;">예 정 가 격</th><th style="width: 15%;">비 고</th></tr> <tr> <td style="height: 30px;"></td><td></td><td></td><td></td><td></td></tr> </table>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광양시 산단과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단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광 양 시 장 [별지 제23호 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남 부 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영수필통지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영 수 중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td> </tr> <tr> <td style="width: 15%;">취급처</td><td style="width: 15%;">광양시 산단과</td> <td style="width: 15%;">취급처</td><td style="width: 15%;">광양시 산단과</td> <td style="width: 15%;">취급처</td><td style="width: 15%;">광양시 산단과</td> </tr> <tr> <td>NO</td><td>지구명</td> <td>NO</td><td>지구명</td> <td>NO</td><td>지구명</td> </tr> <tr> <td>예산과목</td><td>환지청산금, 잡수입</td> <td>예산과목</td><td>환지청산금, 잡수입</td> <td>예산과목</td><td>환지청산금, 잡수입</td> </tr> <tr> <td>납부토지</td><td>동 번지</td> <td>납부토지</td><td>동 번지</td> <td>납부토지</td><td>동 번지</td> </tr> <tr> <td>납부자</td><td></td> <td>납부자</td><td></td> <td>납부자</td><td></td> </tr> <tr> <td>일금</td><td>원 금 연체료 원 계 원</td> <td>일금</td><td>원 금 연체료 원 계 원</td> <td>일금</td><td>원 금 연체료 원 계 원</td> </tr> <tr> <td>납부기한</td><td>20 년 월 일</td> <td>납부기한</td><td>20 년 월 일</td> <td>납부기한</td><td>20 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일 장</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일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2">수납일부인</td> <td colspan="2">수납일부인</td> <td colspan="2">수납일부인 취급자인</td> </tr> </table>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공 매 번 호	재 산 표 시	면 적 (㎡)	예 정 가 격	비 고						남 부 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영수필통지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영 수 중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산단과	취급처	광양시 산단과	취급처	광양시 산단과	NO	지구명	NO	지구명	N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부토지	동 번지	납부토지	동 번지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일금	원 금 연체료 원 계 원	일금	원 금 연체료 원 계 원	일금	원 금 연체료 원 계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일 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일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별지 제3호 서식] ----- ----- ----- ----- ----- 산단택지과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 height: 30px;"></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td></tr> <tr> <td style="height: 30px;"></td><td></td><td></td><td></td><td></td></tr> </table> ----- 산단택지과 ----- ----- 산단택지과 ----- ----- ----- [별지 제23호 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 산단택지과 -----</td> <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 산단택지과 -----</td> <td style="width: 15%;">-----</td><td style="width: 15%;">----- 산단택지과 -----</td> </tr> <tr> <td>-----</td><td>-----</td> <td>-----</td><td>-----</td> <td>-----</td><td>-----</td> </tr> <tr> <td>-----</td><td>-----</td> <td>-----</td><td>-----</td> <td>-----</td><td>-----</td> </tr> <tr> <td>-----</td><td>-----</td> <td>-----</td><td>-----</td> <td>-----</td><td>-----</td> </tr> <tr> <td>-----</td><td>-----</td> <td>-----</td><td>-----</td> <td>-----</td><td>-----</td> </tr> <tr> <td>-----</td><td>-----</td> <td>-----</td><td>-----</td> <td>-----</td><td>-----</td> </tr> <tr> <td>-----</td><td>-----</td> <td>-----</td><td>-----</td> <td>-----</td><td>-----</td> </tr> <tr> <td>-----</td><td>-----</td> <td>-----</td><td>-----</td> <td>-----</td><td>-----</td> </tr> <tr> <td>-----</td><td>-----</td> <td>-----</td><td>-----</td> <td>-----</td><td>-----</td> </tr> </table>											-----		-----		-----		-----	----- 산단택지과 -----	-----	----- 산단택지과 -----	-----	----- 산단택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매 번 호	재 산 표 시	면 적 (㎡)	예 정 가 격	비 고																																																																																																																																									
남 부 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영수필통지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영 수 중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산단과	취급처	광양시 산단과	취급처	광양시 산단과																																																																																																																																								
NO	지구명	NO	지구명	N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부토지	동 번지	납부토지	동 번지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일금	원 금 연체료 원 계 원	일금	원 금 연체료 원 계 원	일금	원 금 연체료 원 계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일 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일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		-----		-----																																																																																																																																									
-----	----- 산단택지과 -----	-----	----- 산단택지과 -----	-----	----- 산단택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 서식]
(후면)

최 고 장

(문의처) 광양시 산단과 (전화 :)

귀하의 체납청산금(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아래와 같으니 20 . . 까지 광양시금고에 이
최고장과 함께
꼭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지 구 명	수 납 번 호	물 건 지	년 도	체 납 금 액	체 납 처 분 자	체 납 이 자	비 고
						부일까지 광양시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 계산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
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광 양 시 장

[별지 제25호 서식]
(후면)

_____ 산단택지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8조(「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광양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공고(제25조 관련)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목록은 광양시 택지조성과에서 배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공 매 번 호</th> <th style="width: 15%;">재 산 표 시</th> <th style="width: 15%;">면 적 (㎡)</th> <th style="width: 15%;">예 정 가 격</th> <th style="width: 1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30px;"></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광양시 택지조성과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택지조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광 양 시 장	공 매 번 호	재 산 표 시	면 적 (㎡)	예 정 가 격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산단택지과 _____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20%;">_____</td> <td style="width: 20%;">_____</td> <td style="width: 20%;">_____</td> <td style="width: 20%;">_____</td> <td style="width: 20%;">_____</td> </tr> <tr> <td style="height: 30px;"></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_____ 산단택지과 _____ 산단택지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공 매 번 호	재 산 표 시	면 적 (㎡)	예 정 가 격	비 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별지 제23호 서식]

남부·선도지구 광양시 도시개발사업 별회계		영수필통지서 광양시·도이지구 사업 특별회계		영수필통지서 광양시·중도지구 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조성과	취급처	광양시 택지조성과	취급처	광양시 택지조성과
NO	지구명	NO	지명	NO	지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번지 동	납부토지	번지 동	납부토지	번지 동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일금	원 금 연체료 원	일금	원 금 연체료 원	일금	원 금 연체료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광 양 시 일 상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합니다. 20 광 양 시 일 상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합니다. 20 광 양 시 일 상	
수납일부인		수납일부		수납일부인 취급자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별지 제25호 서식]

(후면)

최 고 장							
(문의처) 광양시 택지조성과 (전화 :)							
귀하의 체납청산금(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아래와 같으니 20 . . 까지 광양시금고에 이 최고장과 함께 꼭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명	수납번호	물건지	년도	체납금액	체납처분자	체납일자	비고
						부일까지 광양시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별도 계산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광 양 시 장							

[별지 제23호 서식]

산단 택지과		산단 택지과		산단 택지과	
NO	지명	NO	지명	NO	지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번지 동	납부토지	번지 동	납부토지	번지 동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일금	원 금 연체료 원	일금	원 금 연체료 원	일금	원 금 연체료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기한	20 년 월 일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합니다. 20 광 양 시 일 상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합니다. 20 광 양 시 일 상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합니다. 20 광 양 시 일 상	
수납일부인		수납일부		수납일부인	

[별지 제25호 서식]

(후면)

산단 택지과							
귀하의 체납청산금(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아래와 같으니 20 . . 까지 광양시금고에 이 최고장과 함께 꼭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명	수납번호	물건지	년도	체납금액	체납처분자	체납일자	비고
						부일까지 광양시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별도 계산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광 양 시 장							

제9조(「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5조(토지의 평가방법) 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평가는 <u>감정평가법</u> 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5조(토지의 평가방법) ----- ----- 「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 」 ----- ----- -----.
제41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의 <u>토지등기부등본상</u> 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41조(청산대상자) ----- ----- ----- - <u>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u> ----- -----. ----- ----- -----.

[별지 제3호 서식]

광양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공고(제25조 관련)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목록은 광양시 택지조성과에서 배부)

공 매 번 호	재 산 표 시	면 적 (㎡)	예 정 가 격	비 고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광양시 택지조성과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택지조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광 양 시 장

[별지 제23호 서식]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조성과
NO	지구별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
납부토지	번지 동
납부자	
일금	원 금 연체료 계월
납부기한	20 년 월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광 양 시 의 장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영수필통지서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조성과
NO	지구별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
납부토지	번지 동
납부자	
일금	원 금 연체료 계월
납부기한	20 년 월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특별회계 수입금 출납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영수필통지서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	광양시 택지조성과
NO	지구별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
납부토지	번지 동
납부자	
일금	원 금 연체료 계월
납부기한	20 년 월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별지 제3호 서식]

산단택지과

산단택지과

산단택지과

[별지 제23호 서식]

산단택지과	
NO	지구별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
납부토지	번지 동
납부자	
일금	원 금 연체료 계월
납부기한	20 년 월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산단택지과	
NO	지구별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
납부토지	번지 동
납부자	
일금	원 금 연체료 계월
납부기한	20 년 월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산단택지과	
NO	지구별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
납부토지	번지 동
납부자	
일금	원 금 연체료 계월
납부기한	20 년 월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별지 제25호 서식]

(후면)

최 고 장 (문의처) 광양시 택지조성과 (전화 :) 귀하의 체납청산금(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아래와 같으니 20 . . 까지 광양시금고에 이 최고장과 함께 꼭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지 구 명	수 납 번 호	물 건 지	년 도	체 납 금 액	체 납 처 분 자	체 납 이 자	비 고
						부일까지 광양시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 계산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 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광 양 시 장							

[별지 제22호 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제42조 관련)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
여 청산금의 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상 계 내 역

대 장 번 호	물 건 지		소유 자	정수청산 금	교부청산 금	상계 후 청산금 액	
	동 명	지 번				정 수	교 부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붙 임 : 토지등기부등본 각 1통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후면)

_____ _____ 산단택지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별지 제22호 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제42조 관련)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토지등기사항증명서 _____

제10조(「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준용규정) 공영개발사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u>법시행규칙</u> 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u>예산회계법</u> , <u>동법시행령</u> , <u>지방재정법</u> , <u>동법시행령</u> 및 「 <u>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u>공유재산관리조례</u> 및 <u>물품관리조례</u> 를 준용한다.	제4조(준용규정) ----- ----- <u>같은 법 시행규칙</u> ----- ----- 「 <u>예산회계법</u> 」, <u>같은 법 시행령</u> , 「 <u>지방재정법</u> 」, <u>같은 법 시행령</u> -----, 「 <u>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u> 」 및 「 <u>광양시 물품관리조례</u> 」-----.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제10조(장부의 종류) ----- -----.
1. 「 <u>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u>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 ~ 자. (생략)	1. 「 <u>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u>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가. ~ 자.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25조(예산의 이월) ① 관리자는 <u>법 제30조의제1항 및 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 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① ----- - <u>법 제30조의제1항</u> ----- ----- ----- ----- ----- -----.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u>영 제4조제4항</u> 의 규정 에 의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 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 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 --- <u>영 제6조제4항</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광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채증권 일부) ① (생략)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2. <u>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u> 에 규정된 사항	제11조(지방채증권 일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2. 「 <u>지방재정법시행령</u> 」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4조(운영신청 및 구비서류)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관리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3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유형 및 소재지, 법인·단체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 ~ 6. (생략)	제14조(운영신청 및 구비서류) -- ----- ----- ----- ----- -----. 1. (현행과 같음) 2. ----- 등 <u>기사항증명서</u> ----- -- 3. ~ 6. (현행과 같음)

제14조(「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2조제4호 및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u>등기부 등본</u> 및 지적도 등본 7. (생략) ② ~ ⑤ (생략)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등기사항증명서</u>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제2조(적용대상) ----- ----- -----. 1. -----

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나.·다. (생략) 2. ~ 4. (생략)	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 ----- ----- ----- 나.·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10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2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14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안」

2.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 7. 1.)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일괄개정하여 ‘전라남도’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총 144건 (조례 102건, 규칙 28건, 훈령 14건) 일괄개정
- 자치법규(조례·규칙) 및 행정규칙(훈령)에 규정된 명칭 정비
(전라남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5. 개정안(조례안, 규칙안, 규정안) : 별첨

6. 입법예고기간: 2026. 6. 26. ~ 2026. 7. 3. (7일간)

7. 의견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기획예산실(우 57785)

- 전 화 : 061-797-2709

- 팩 스 : 061-797-2574

- 전자우편 : ekfhd0327@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괄개정조례안 1부(별첨).
3. 일괄개정규칙안 1부(별첨).
4. 일괄개정규정안 1부(별첨).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
양시 10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2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
양시 14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지정
도로 노선의 [] 변경 고시
[] 폐지

광양시 고시 제2026-172호

도로법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제21조제3항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지정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폐지

2026년 6월 일

광양시장(도로관리청) (직인)

구 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번호		대3호선	
노선명		시도 대3호선	
기점		광양읍 세풍리 1305-2	
종점		도월리 605-33	
주요 통과지		세풍리, 도월리 일원	
총연장(킬로미터)		2.240km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 (킬로미터)	-	

작성방법

-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광 양 시 장

1.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신청 내용

가. 신청자 : 광양시장(관광과)

나. 신청지역: 태인동 1630-1번지 인근

다. 점용면적: 10,827.19㎡

라. 목적: 광양시 태인동 일원에 관광시설 확충 및 활성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래마당 조성

마. 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2. 공고대상: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2026. 7. 1.(수) ~ 2026. 7. 15.(수) (14일간)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026. 7. 15.(수)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철강항만과(☎061-797-3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